

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
제7차 산업건설위원회, 2009. 12. 15(화)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산업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임채옥

<의안번호 제2009 - 60호>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12. 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2. 8.

## 2. 제안이유

-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 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,
-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·조정 및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. (안 제6조의2 신설).

- 실무위원회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,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)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.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.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,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나. 그 밖에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임기 등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.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, 제12조
-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2010년도 본예산 반영(980천원)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 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 : 생략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(실무위원회)에서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 및 군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하며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함.

## 6. 참고자료

#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09.7.1] [법률 제9299호, 2008.12.31, 일부개정]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1.26, 2007.8.3, 2008.12.31>

1. "재난"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태풍·홍수·호우(호우)·강풍·풍랑·해일(해일)·대설·낙뢰·가뭄·지진·황사(황사)·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.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다.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2. "해외재난"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.

3. "재난관리"라 함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4. "안전관리"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5.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

**제9조(중앙안전관리위원회)**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이 된다.

③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, 재난의 대비·대응·복구(이하 "수습"이라 한다)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·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·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·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2.29>

④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,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,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된다. <개정 2007.1.26, 2008.2.29>

⑤ 중앙위원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중앙위원회·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지역위원회)**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소속하에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7.1.26>

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2조(지역위원회의 기능)**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 <개정 2007.1.26>

1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4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5.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

**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**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중앙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중앙본부장"이라 한다)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,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소속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(이하 "수습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.

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** ① 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각각 둘 수 있다. 다만,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-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지역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=> [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]

## □ 「공연법」

[시행 2008.2.29] [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타법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1.12.31, 2002.1.26, 2006.9.27>

1. "공연"이라 함은 음악·무용·연극·연예·국악·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.
2. "선전물"이라 함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.
3. "공연자"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.
4. "공연장"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5. 삭제 <2001.12.31>
6. "연소자"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

**제11조(재해예방조치)**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6.9.27>

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6.9.27>

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공연법 시행령」

[시행 2008.12.31] [대통령령 제21214호, 2008.12.31, 타법개정]

**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**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
2.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
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,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9>

[전문개정 2002.7.30]